

투자권유준칙

투자권유준칙

주관팀	상품기획팀
제정일자	2009년 3월 9일
개정일자	2012년 1월 20일
개정일자	2013년 9월 16일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GS자산운용(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고객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파생상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 파생상품
 -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편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은 제공한다.

제5조(일반 · 전문투자자의 구분)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3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1장 투자자정보

제6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분석한 '투자자 정보 분석 결과표'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36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알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4. 1부터 3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투자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양식에 의거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투자자의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권유

제8조(투자권유 절차)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 제2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9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2)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3)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 ·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①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②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③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a)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b)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c)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다. 신탁계약
 - (a)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b)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5)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 · 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6)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 · 물품 · 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3장 설명의무

제10조(설명 의무)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3. 임직원등은 1 및 2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임직원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1)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5. 임직원등은 1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 6.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4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1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지 제3호]와 같이 분류한다.

- 1)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 2)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제5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2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1.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2)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3)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2.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1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1)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2)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3)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4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1.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 1)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 2)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 3)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4)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2. 임직원은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한다.

1)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3)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 · 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 · 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 · 기법 또는 특정한 자산운용배분의 전략 · 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5)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6)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7)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9)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 · 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1.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2)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수수료에 관한 사항

7)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7)-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8)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호의 사항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된다.

1)1의 각호의 사항

2)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투자일임재산이 위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16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및 2)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1) 및 2)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17조(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1)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파악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임직원등은 전문투자자의 운용계획과 투자예정기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자성향을 분류하고, [별지 제4호]의 내용에 따라 전문투자자와의 상담보고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2)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분석한 '투자자 정보 분석 결과표'를 일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

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및 제4-93조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 또는 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1. 고객님의 연령대 (개인인 경우)	① 19세 이하 ② 20세 ~ 40세 ③ 41세 ~ 50세 ④ 51세 ~ 60세 ⑤ 61세 이상
1-1 법인 설립 경과년수 (법인인 경우)	① 25년 이상 ② 20년 이상 ③ 15년 이상 ④ 10년 이상 ⑤ 10년 미만
2.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가능기간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③ 1년 이상~2년 미만 ④ 2년 이상~3년 미만 ⑤ 3년 이상
3.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상품 (중복응답 가능)	①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②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③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④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⑤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4. 고객님의 월 소득 수준	① 50만원 이하 ② 100만원 이하 ③ 300만원 이하 ④ 500만원 이하 ⑤ 500만원 초과
4-1 최근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법인의 경우)	① 10억 이하 ② 20억 이하 ③ 30억 이하 ④ 40억 이하 ⑤ 50억 초과
5. 고객님의 총 자산규모(순자산)	① 1억 이하 ② 5억 이하 ③ 10억 이하 ④ 50억 이하 ⑤ 50억 초과
6. 고객님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이 고객님의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등을 제외) 중 차지하는 비중	① 10% 이하 ② 10% 초과~20% 이하 ③ 20% 초과~30% 이하 ④ 30% 초과~40% 이하 ⑤ 40% 초과
7. 고객님의 투자목적	①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②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③ 시장(예 : 주가지수)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④ 채권이자 ·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⑤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주.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
8. 투자원금 손실 발생의 경우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투자위험 감수 능력)	①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 ②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다. ③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④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9. 고객님의께서는 계약기간이 반 이상 남은 시점에서 단기적으로(1~2개월 동안) 예상 손실한도를 넘어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포트폴리오 모두 환매 ② 포트폴리오 일부 환매 ③ 관망 ④ 신규 투자자금 추가 불입

주) "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의 작성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변경 또는 신규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 정보 분석 결과표

● **투자자 정보 분석 결과**

본 투자자 정보 분석 결과는 고객님의께서 제공하신 정보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습니다. 투자자 정보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고객님의 정보는 고객님의 투자권유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 분석결과 : 위험선호형 적극형 성장형 안정성장형 위험회피형
- ◆ 분석일자 : 20 년 월 일
- ◆ 담당직원 :
- ◆ 고객성명 :
- ◆ 기초정보 결과 : 위험선호형 적극형 성장형 안정성장형 위험회피형

주) 분석결과는 기초정보 결과와 위험도가 같거나 낮은 값을 적용합니다.

● **투자자 정보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

구분	성 향	기초정보 점수
위험선호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80점초과
적극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60점초과 ~ 80점이하
성장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40점초과 ~ 60점이하
안정성장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20점초과 ~ 40점이하
위험회피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20점이하

본인은 투자자 정보 확인서 작성에 의한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서명)

<별지 제 2 호>

적합성 판단 방식

□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 후,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함

(1) 투자성향 점수화 방식

□ 문항별 배점

- 1번 :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2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3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중복 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4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5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6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7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8번 : ①로 응답한 경우 -2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4점, ④

로 응답한 경우 6점

- 9번 : ①로 응답한 경우 -2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4점, ④로 응답한 경우 6점

(2) 점수 계산 방법

- 1 번부터 9 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46 점)하고, 이를 100 점으로 환산

(예) 1 번부터 9 번까지의 합이 35 점인 경우, 35 점/46 점 × 100 = 76.0 점

(3) 투자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 단계로 분류

- * 20점이하 : 위험회피형
- * 20점초과 ~ 40점이하 : 안정성장형
- * 40점초과 ~ 60점이하 : 성장형
- * 60점초과 ~ 80점이하 : 적극형
- * 80점초과 : 위험선호형

주) 투자자의 투자예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위험선호형과 적극형으로 분류 불가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 분	초고위험 상품 (Speculative Risk)	고위험 상품 (High risk)	중위험 상품 (Intermediate Risk)	저위험 상품 (Low Risk)	초저위험 상품 (Ultra Low Risk)
위험회피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성장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성장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형	투자권유불가				
위험선호형					

<별지 제 3 호>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채 권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회사채 (BBB+~BBB-)	금융채 회사채 (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비보장형		원금 부분보장형	원금보장형	
	ELW	ELW				
주 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 식			
선물옵션		선물옵션				

<별지 제 4 호>

<상담보고서 작성시 파악할 투자자정보 항목 예시>

구분	내용
투자자정보	투자자의 기본정보 (성명, 연령, 주소 등)
투자목적과 투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의 투자목적(정기적 수입, 은퇴자금, 교육자금, 자산증식 등)과 해당목적에 따른 예상 투자기간 등에 관한 답변 사항 - 투자자의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펀드에 대한 투자경험 유무 및 투자기간 등
재산상황	투자자의 투자금액, 투자금액이 총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총 자산현황(금융자산, 부동산 등), 수입원(고정수입원 유무, 직장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월수입, 지출현황 등), 향후 5 년 동안의 재정 상태에 대한 예상 등에 관한 답변 사항
투자경험 및 지식,투자권유 의존도	투자자의 투자경험("파생상품등"을 포함하여 기존 투자했던 금융상품 유형 및 투자기간 파악), 금융상품 투자에 관한 지식수준, 투자결정시 전문가에의 투자조언 여부 등에 관한 답변 사항
위험에 대한 태도	투자자의 기대수익률 및 손실률에 대한 감내수준, 시장상황 (예 : KOSPI 지수추이)에 따른 기대 수익률(가상의 수익률 안을 여러 개 제시), 큰 폭의 시장하락 또는 장기적인 시장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간별 누적수익률에 대한 선호도(가상의 투자안을 여러 가지 제시함), 5 년 이상의 투자기간에 대한 가상의 기간별 투자수익률을 제시하고 현 시점에서의 투자결정(투자자금 전액 출금, 일부출금, 추가매입, 보유 등)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투자자와의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특이정보 (2년 후 이민계획, 자녀의 대학 입학, 자녀의 유학계획 등)
----	--

<별지 제 5 호>

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투자일임계약의 매 분기 확인용)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2 에 의거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로부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투자정보 확인서 입니다.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हे드리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및 제4-93조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 또는 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1. 고객님의 연령대 (개인인 경우)	① 19세 이하 ② 20세 ~ 40세 ③ 41세 ~ 50세 ④ 51세 ~ 60세 ⑤ 61세 이상
1-1 법인 설립 경과년수 (법인인 경우)	① 25년 이상 ② 20년 이상 ③ 15년 이상 ④ 10년 이상 ⑤ 10년 미만
2.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가능 기간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2년 미만 ④ 2년 이상 ~ 3년 미만 ⑤ 3년 이상
3.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상품 (중복응답 가능)	①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②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③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④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⑤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4. 고객님의 월 소득 수준	① 50만원 이하 ② 100만원 이하 ③ 300만원 이하 ④ 500만원 이하 ⑤ 500만원 초과
4-1 최근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법인의 경우)	① 10억 이하 ② 20억 이하 ③ 30억 이하 ④ 40억 이하 ⑤ 50억 초과
5. 고객님의 총 자산규모(순자산)	① 1억 이하 ② 5억 이하 ③ 10억 이하 ④ 50억 이하 ⑤ 50억 초과
6. 고객님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이 고객님의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등을 제외) 중 차지하는 비중	① 10% 이하 ② 10% 초과 ~ 20% 이하 ③ 20% 초과 ~ 30% 이하 ④ 30% 초과 ~ 40% 이하 ⑤ 40% 초과
7. 고객님의 투자목적	①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②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③ 시장(예 : 주가지수)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④ 채권이자 ·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⑤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주.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
8. 투자원금 손실 발생의 경우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투자위험 감수 능력)	①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 ②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다. ③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④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